

민·관 협력형 틱스타운(시범운영) 주관기관 모집 공고

틱스 기업 발굴·육성 및 지역창업 확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「민·관 협력형 틱스타운」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3. 1. 10.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1

사업 개요

□ 사업 목적

- 비수도권에 既 조성된 창업지원 인프라를 민·관 협력형 틱스타운으로 지정하여 지역 내 틱스 기업 발굴·육성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도모

□ 선정 규모 : 1개 기관

*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비수도권 소재(서울·경기·인천 제외) 기관만 신청 가능

□ 운영기간 및 예산

- (운영기간) 2년간 ('23~'24년) 운영 이후 평가를 통해 연장 가능

* 연 단위 협약으로 진행

** 2년간 시범 운영 후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업수행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수행 중 신청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도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

- (지원예산) 정부지원금 200백만원 이내 ('23년)

- 민·관협력형 틱스타운 운영·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, 프로그램 운영비, 리모델링비, 건물 임차·관리비 등

- 주관기관은 총 사업비의 50% 이상을 대응자금으로 부담

* 대응자금은 현금 및 현물로 부담. 단, 대응자금의 20%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

< 총 사업비 구성(예시) >

총 사업비(C=A+B)	정부지원금(A)	대응자금(B)	
		현금	현물
100%	200백만원 (총 사업비의 50% 이하)	대응자금의 20% 이상 (총 사업비의 50% 이상)	대응자금의 80% 이하

2

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

□ 신청 자격

○ 창업지원 인프라를 보유한 비수도권* 소재 민간기관(단체), 공공기관

*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비수도권 소재(서울·경기·인천 제외) 기관만 신청 가능

- 신청(주관)기관은 민·관 협력형 팀스타운 모델 운영을 위해 단독 또는 컨소시엄(주관기관-협력기관) 구조로 사업신청 가능

* 컨소시엄 구조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, 협약은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간 체결하고, 주관기관은 팀스타운 운영 및 사업비의 집행관리를 일괄 수행협력기관에 사업비를 직접 교부할 수 없음

- 공공기관 또는 대학(산학협력단 포함)이 신청할 시 지역 내 민간기관을 1개 이상 협력기관으로 포함하는 컨소시엄 구성 필수

※ 지방자치단체(『지방자치법』 제2호(지방자치단체의 종류)에 해당하는 법인)는 신청기관의 협력기관으로만 사업참여 가능

< 민·관 협력형 팀스타운 주관기관 신청자격 >

구분	신청 자격
민간 기관 (단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『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▶ 『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』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▶ 『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(액셀러레이터) ▶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, 주무관청의 인·허가를 받은 법인·협회·단체 - 단, 일반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*이 "B" 이상이어야 함 *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로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(또는 기업어음)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(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,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) 기준
공공 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『공공기관운영법』 제4조(공공기관)에 해당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 ▶ 『지방공기업법』 제2조(적용범위)에 해당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 ▶ 『지방출자·출연법』 제2조(적용대상 등)에 해당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 ▶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·단체
대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『고등교육법』 제2조(학교의 종류)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등 ▶ 『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』 제3조 1, 2, 3, 3의2호에 해당되는 기관 * 2023년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한함(교육부, '22.6.3. 발표) ** 본교 및 분교(캠퍼스 포함), 기술지주는 동일사업에 함께 신청 불가

□ 신청 제외대상

- 신청기관 (또는 대표자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업 신청을 제한

- | |
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『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』 등 관계 법령·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②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⑥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'협약 해약' 판정을 받은 경우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|
|--|

3

신청 요건

1 주관기관이 소유·임차한 입주공간 및 지원시설 확보

- 입주공간은 창업기업 입주 전용공간* 및 공용공간**으로, 연면적 990m² 이상을 확보

* 전용공간은 타 목적시설(중기부 지정 창업보육센터,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등)과 분리되어, 틱스 기업 및 운영사 등 입주기업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조성·활용되어야 함

** 타 목적시설 등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용공간은 해당면적의 50%를 연면적으로 인정. 본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과다 산입한 경우에는 실사를 통해 해당 면적을 제외할 수 있음

*** 공간 확보는 건물 전체 또는 건물의 일부(예. 6층 건물 중 5~6층)도 가능

- 입주 전용공간은 입주기업 사무공간으로, 10개실(1개실 당 4인 이상 기준) 이상을 독립형 공간으로 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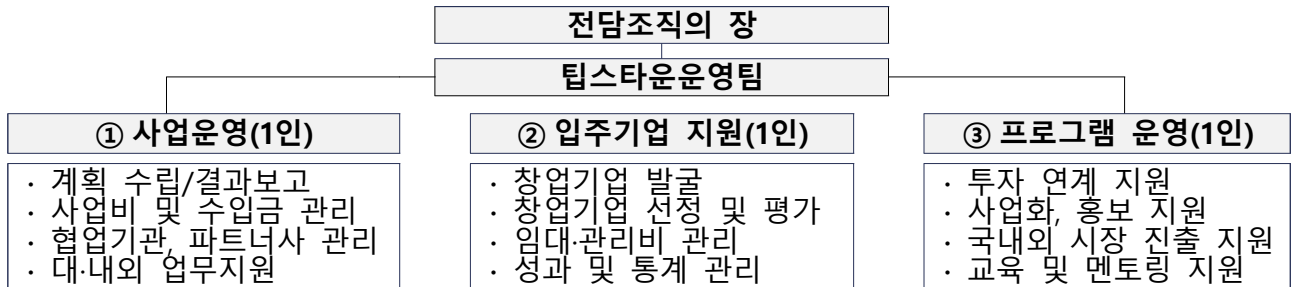
< 민관협력형 틱스타운 공간 및 시설 확보요건 >

구분	내용	비고
입주공간 및 시설	틱스타운 입주기업을 위한 사무실, 회의실, 네트워킹 공간 등 연면적 990m²(전용+공용면적) 이상 을 확보	
전용공간	입주기업이 사용 가능한 독립형 공간을 10개실(4인 이상 기준) 이상 확보	
공용공간	입주기업을 위한 회의장, 행사장, 세미나실(교육장) 등 확보	
지원시설	(무선)인터넷, 복사(복합)기, 빔프로젝터, 사무용 기자재, 보안시스템, 부대시설 등 구비	

2 팁스타운 전담조직 설치·운영

- 민관 협력형 팁스타운 운영을 위해 주관기관 내 별도의 전담조직 설치

< 팁스타운 전담조직(예시) >



- 전담조직은 창업지원역량을 보유한 2인 이상(전담조직의 장 제외)의 전담 및 겸직인력으로 구성
 - 전담조직의 장(1인)은 창업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, 사업 기획·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, 시설 운영·관리업무 대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
 - 전담인력(2인 이상)은 팁스타운 운영을 100% 수행하는 인력으로 필수 구성하고, 시설 운영·관리를 위해 겸직인력을 추가 구성할 수 있음

3 팁스타운 운영을 위한 채용 확보

- 팁스 기업 발굴·육성 및 팁스타운 운영·관리를 위해 정부지원금 이상(총 사업비의 50% 이상)의 대응자금을 마련
 - * 대응자금은 현금 및 현물로 부담 가능. 단, 현금은 대응자금의 20% 이상을 부담해야 함(국비 및 지방비로는 투입 불가)

< 총 사업비 구성(예시) >

총 사업비(C=A+B)	정부지원금(A)	대응자금(B)	
		현금	현물
100%	200백만원 (총 사업비의 50% 이하)	대응자금의 20% 이상 (총 사업비의 50% 이상)	대응자금의 80% 이하 (총 사업비의 50% 이상)

< 대응자금(현물) 인정기준 >

구분	인정기준
현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관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월평균 급여액 x 10개월(당해연도 협약기간) · 공간 임차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팁스타운 공간 월 임차료 x 10개월(당해연도 협약기간) · 건물 사용료 : 공시가격 x 사용 연면적/총 연면적 x 5%

4 팁스타운 內 팁스 선정기업 및 팁스 운영사 입주 지원

- '23.12.31일까지 입주 전용공간(독립형 사무공간)의 30% 이상을 팁스 선정기업 및 팁스 운영사 등으로 유치
 - * 팁스 선정기업 및 운영사, 투자기관 입주현황은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으로, 당해 연도 말('23.12.31)까지 목표 수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(팁스 선정기업) TIPS R&D 또는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*에 선정**된 기업
 - * 프리팁스 참여기업은 제외
 - ** 본 공고일('22.1.10.) 기준, 사업 성공(또는 실패) 판정을 받은 기업은 제외
- (팁스 운영사 등) 중기부가 선정한 팁스 운영사 또는 스타트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투자기관*으로 1개사 이상 입주 필수
 - * 창업기획자,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LLC,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, 신기술창업전문회사,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등

5 유망 창업기업 발굴·보육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

- 지역 내 유망 창업기업 발굴·보육 프로그램 운영
 - 지역 내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역량강화 등 프로그램 운영
 - 팁스타운 입주기업(팁스 선정기업 등 창업기업) 성장촉진 프로그램 운영
 - * 팁스 운영사 등 투자기관과 연계한 IR 프로그램,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
-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
 - 신청기관의 강점·전문성 등을 활용한 팁스타운 중심의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프로그램* 운영
 - * 대학, 연구소, 투자자 및 창업지원기관 등 다양한 혁신창업주체와의 협업 프로그램 등

4

신청 및 접수

신청기간 : 2023년 1월 16일(월) ~ 2월 7일(화) 18:00까지

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- (신청방법) K-startup 누리집(www.k-startup.go.kr) → 창업사업통합 정보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

①회원가입(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) → ②K-startup 접속 → ③사업신청관리 클릭 → ④사업 신청 클릭 → ⑤'민관협력형 팁스타운 주관기관 모집 공고' 클릭 → ⑥신청서 작성 필수값 동의(개인정보 등) → ⑦기본정보(일반현황 인력정보 등) 입력 → ⑧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(용량제한 300MB 유의) → ⑨제출 → ⑩사업신청내역조회에서 신청 확인(접수상태 '제출완료')

* 회원가입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로 진행

- (제출서류) 제출 공문,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, 전담인력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각 1부

* 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제출한 자료의 수정·보완·교체 및 추가 제출은 절대 불가

□ 문의처

- (시스템 문의)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
- (사업 문의) 창업진흥원 팁스타운운영팀 042-720-4566, 4567

5

평가 및 선정

□ 평가 방법 및 절차

- 2단계 평가 (① 서류평가 → ② 발표평가)로 운영
 - 요건검토 : 입주공간, 전담조직 구성, 채용(대응자금) 등 주관기관 신청요건 및 자격 충족여부 등 검토
 - 서류평가 :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선정규모의 3배수 내외를 고득점 순으로 선발, 발표평가 대상기관으로 선정
 - * 서류평가 결과에 따라 별도의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, 현장확인결과는 발표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
 - 발표평가 : 팁스타운 조성 인프라 및 지원역량, 팁스 관련 기업 입주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
 - * 평가시간 : 30분 이내 (발표 15분, 질의응답 15분 이내)
 - ** 코로나19 등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화상 평가 등으로 변경하여 운영될 수 있으며, '민관협력형 팁스타운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장'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
 - 단계별 (서류 및 발표) 총점 60점 이하 득점 기관은 과락 처리

< 민관협력형 팁스타운 주관기관 평가일정(안) >

사업 신청·접수	서류평가	발표평가	최종 선정
K-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	사업계획서 평가	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	K-Startup 누리집 공고
~'23. 2. 7.	~'23. 2월	~'23. 3월 중	'22. 3월 중

*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신청기관별 발표평가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

** 서류평가 후 별도의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

*** 이의신청은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,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

□ 최종 선정

-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종 선정기관 후보기관을 결정하고, 심의 위원회 개최를 통해 주관기관 최종 선정 확정

□ 평가지표(안)

< 민·관협력형 팁스타운 선정평가지표(안) >

요건 검토	▶ 신청자격 충족 여부 (신청자격 기준 및 신청 제한 해당 여부) ▶ 신청요건 충족 여부 (인프라, 자원, 전담조직 등)	(적/부)
--------------	--	-------

평가 항목		평가 지표	배점
서류 평가	사업의지 및 역량	▶ 신청기관 현황 및 사업 추진 의지 ▶ 팁스타운 인프라(공간시설, 조직인력) 구축 및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현황 등 ▶ 창업보육 및 투자(연계)지원 실적 등	40
	비전(전략) 및 운영계획	▶ 팁스타운 비전 및 중장기 추진전략 등 ▶ 팁스 관련기업(선정기업 및 운영사) 발굴 및 입주유치계획 ▶ 입주기업 성장촉진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계획 등	60
	가점	▶ (최대 2점) 팁스 관련기업(선정기업 및 운영사) 既 입주 * 팁스타운 입주 전용공간의 10% 이상(1점), 20% 이상(2점)	최대 2점
합 계			102

평가 항목		평가 지표	배점
발표 평가	비전 및 운영전략	▶ 팁스타운 비전 및 전략, 중장기 목표 및 달성전략 등 ▶ 민·관 협력형 팁스타운 모델 운영 가능성 등 ▶ 팁스타운 성과관리 방안 등	30
	팁스 관련기업 등 발굴·육성	▶ 팁스 선정기업 및 운영사 등 입주시 발굴 및 입주유치계획 ▶ 입주기업 인프라 지원계획 ▶ 입주기업 성장촉진 프로그램 운영계획	50
	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	▶ 지역 창업생태계 구성원 간 연계·협력체계 구축계획 ▶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계획	20
합 계			100

* 상기 선정평가지표(안)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

6

유의 사항

-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
- 최종 선정된 주관기관은 협약서 및 별도 지침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- 사업 신청은 신청기관의 대표자*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
 - * 신청기관의 장 (협력기관의 장 또는 전담조직의 장 명의로 신청 불가)
-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제출 및 접수는 신청 기간 ('23.2.7(화), 18:00) 내 필히 완료되어야 하며, 마감 이후 추가 제출은 불가함
 - * 제출서류 등에 누락·착오가 있더라도 신청마감일 이후 수정·보완·교체 등 일체 불가
- 선정 이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하지 아니할 수 있음
- 틱스타운 공간 및 대응자금 확보, 전담조직 설치는 협약 시작일 이후 1개월 이내, 그 외 신청요건은 공고문 및 별도 지침이 정한 기한 내에 계획대로 이행하여야 함
 - * 의무사항 이행내용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협약체결 시 제출
 - ** 기한 내 신청요건 미충족 시, 선정 취소 또는 협약 중도 해약할 수 있음
-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, 주관기관 신청 자격에 위반되는 사항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음
- 신청기관은 타 기관을 협력기관으로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, 협약은 전담기관 (창업진흥원)과 신청기관 간 진행
 - * 모든 사업비는 신청기관에서 일괄 관리·집행 (협력기관에 사업비 재교부 불가)
 - ** 틱스타운 인프라로 신청한 공간 외에는 "틱스타운"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

- 선정된 기관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의 계좌를 필수로 개설하고,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(PMS)을 통한 사업비 지출(회계처리)이 가능하여야 함
 - *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, 사업수행 불가 및 협약 해지
- 사업 선정 이후 협약 기간 내에 대응자금 미집행 시,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미집행 비중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 또는 주관기관 성과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
- 사업 선정 후,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 환수 및 향후 동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-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관은 신청 불가